##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	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결글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146,520	10,810	0	0	
02월	146,520	10,810	0	0	
03월	146,520	10,810	0	0	
04월	152,280	11,230	0	0	
05월	152,280	11,230	0	0	
06월	152,280	11,230	0	0	
07월	152,280	11,230	0	0	
08월	152,280	11,230	0	0	
09월	152,280	11,230	0	0	
10월	155,280	11,530	0	0	
11월	155,280	11,530	0	0	
12월	155,280	11,530	0	0	
연말정산	91,660	5,980			
합계	1,910,740	140,380	0	0	
총합계				2,051,12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1-

2.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외소득 7,200만원 초과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이며,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76,990	88,870
02월	76,990	0
03월	76,990	0
04월	76,990	0
05월	76,990	0
06월	76,990	0
07월	76,990	0
08월	0	0
09월	0	0
10월	0	307,520
11월	0	153,760
12월	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	험료 납부금액	1,385,91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10,170
합계	538,930	1,946,230
	총합계	2,485,16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	(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A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 <sup>0</sup> 험	이프 Super보			
보장성	411-83-04	1***	6080152295	50000	750101-*****	김길동	1,143,000
	C은행		무배당 삼성화재 기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보장성	620-83-00	)***	5132152203	30000	750101-*****	김길동	100,000
	810101-*****	홍부인					
	C은행		무배당삼성화재자 <sup>니</sup> 에	무배당삼성화재자녀보험엄마맘 에			
보장성	620-83-00***		5150583740	00000	810101-*****	홍부인	350,067
	C은행		무배당삼성화재자녀보험엄마맘 에				
보장성	620-83-00	)***	51308627980000		000101-****	김영수	242,22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루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2(수익자)		수익자)	
	A화재해상보험		해외여행보험				
보장성	411-83-04	1***	81846799740000		750101-*****	김길동	99,030
	DD보험		스마트가정보장	스마트가정보장보험1701			
장애인보장 성	613-83-00***		320171065873		750101-*****	김길동	1,962,000
	000101-****	김영수	170101-*****	김둘리			
	인별합계금액						3,896,317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통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수익자)	r)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AB손해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 <sup>0</sup> 험	이프 Super보					
보장성	212-82-03	3***	60900306210000		810101-*****	홍부인	1,722,730		
	750101-*****	김길동							
	인별합계금액						1,722,73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영수	000101-*****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A화재해상.	보험	무배당삼성화재자니 에	· · · · · · · · · · · · · · · · · · ·			
보장성	411-83-04	1***	51308609430000		000101-****	김영수	360,000
	인별합계금액						360,000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둘리	170101-*****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	호	주피보험	l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AB손해보	.험	무배당삼성화재자니 에	<sup>킈</sup> 보험엄마맘				
보장성	212-82-03	3***	51220049330000		170101-****	김둘리	489,872	
	인별합계금액		489,					489,872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07-90***	P***	일반	38,400
**5-03-82***	O***	일반	24,000
**5-01-58***	g**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84,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62,4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84,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46,4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8-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연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5-03-71***	K****	산후조리원 비용	4,700,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4,700,000
인별합계금액			4,700,0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9-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연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영수	00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3-14-33***	와****	폐업의료비(비보험제외)	14,200
**5-01-58***	혜****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 구 구입비용	94,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08,2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08,2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0-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연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철수	05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5-01-58***	P***	의료기기 구입비	96,8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96,8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96,8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1-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연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6-23-23***	U***	일반	6,6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6,6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6,6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2-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연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둘리	17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5-01-58***	영**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484,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484,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484,0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3-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연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대학원	***대학원	**5-83-02***	일반교육비	9,500,000
일반교육비	비 합계금액	٤		9,500,000
현장학습비	비 합계금액			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4-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대학교	***대학교	**7-83-01***	일반교육비	9,181,000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2-82-03***	일반교육비	2,000,00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11,181,000
현장학습비	l 합계금액			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영수	00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7-82-00***	일반교육비	2,760,000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 관	**6-82-01***	일반교육비	680,00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3,440,000
현장학습비	l 합계금액			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철수	05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중학교	***중학교	**3-82-06***	일반교육비	37,600
중학교	***중학교	**3-82-06***	현장체험학습비	76,740
일반교육비	비 합계금액			37,600
현장학습비	비 합계금액			76,74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7-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둘리	17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유치원	***유치원	**9-83-02***	일반교육비	1,100,000
학원	***학원	**4-83-00***	일반교육비	1,840,72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2,940,720
현장학습비	합계금액			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8-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수강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직업훈련비 납입내역 (단위:원)

교육기관명	사업자번호	과정명	과정코드	지출금액 계
FF 아카데미	605-85-44***	디지털디자인향상과정(웹표준 및웹접근성)	AIG201600001202663	189,450
FF 아카데미	605-85-44***	실내건축설계 향상과정(Auto CAD)	AIG201600001201248	60,250
Q 직업학교	617-19-53***	중국어 초급 2	ACG2016200062191918	552,000
합계금액				801,700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19-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 2. 공제대상금액한도 : 한도 없음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철수	050101-*****

■ 교복구입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호	지출금액 계
314-83-01***	***학교	242,000
305-16-25***	OK교복	52,000
605-01-59***	학생교복	142,000
인별합계금액		436,000

1. 공제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용

2. 공제 한도 : 학생 1명당 연 50만원

(교복구입비와 수업료 등 교육비를 합하여 연 300만원 공제한도 적용)

일련번호: 20191219-0118148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교육비: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내역

(단위:원)

자료제	출기관	원리금상환액	
상호	사업자번호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금액)	
장학재단	**4-82-10***	530,225	
행복기금	**0-87-71***	866,373	
학자금 공사	**4-81-86***	7,838,368	
인별합계금액		9,234,966	

- 1. 공제 대상: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에 한정)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
  - ※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의 종류
    -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21-

-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2. 공제 한도: 한도 없음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3,844,587	86,000	0	94,000	14,024,587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13-86-15***	QWQ카드	일반	5,777,570
신용카드	213-86-15***	QWQ카드	전통시장	86,000
신용카드	202-81-48***	YAY카드 (주)	일반	8,067,017
신용카드	202-81-48***	YAY카드 (주)	도서공연등	94,000
인별힙	:계금액			14,024,587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91219-01181481

(단위: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7,048,673	89,500	183,100	0	17,321,27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1-86-61***	RLR카드	일반	16,244,550
신용카드	101-86-61***	RLR카드	전통시장	89,500
신용카드	101-86-61***	RLR카드	대중교통	183,100
신용카드	202-81-48***	YAY카드 (주)	일반	804,123
인별합	계금액	17,321		17,321,273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91219-01181481

(단위: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장인	60010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3,972,590	193,000	146,050	0	4,311,640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8***	YAY카드 (주)	일반	3,972,590
신용카드	202-81-48***	YAY카드 (주)	전통시장	193,000
신용카드	202-81-48***	YAY카드 (주)	대중교통	146,050
인별힙	계금액	4,33		4,311,64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6,863,600	256,900	109,700	470,600	7,700,8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20-81-54***	ETE 은행	도서공연등	470,600
신용카드	202-81-45***	HYH카드(주)	일반	6,863,600
신용카드	202-81-45***	HYH카드(주)	전통시장	256,900
신용카드	202-81-45***	HYH카드(주)	대중교통	109,700
인별합	계금액	7,		7,700,8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91219-01181481

(단위: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5-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0	0	0	1,115,980	1,115,980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20-81-54***	ETE 은행	도서공연등	1,115,980
인별합계금액				1,115,980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91219-0118148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6-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540,761	122,000	151,700	24,500	1,838,961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01-81-68***	FGF 은행	도서공연등	24,500
직불카드 등	101-86-61***	RLR카드	일반	1,540,761
직불카드 등	101-86-61***	RLR카드	전통시장	122,000
직불카드 등	101-86-61***	RLR카드	대중교통	151,700
인별힙	계금액	1,8		1,838,961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부친	42010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451,596	0	0	0	1,451,596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14-81-37***	PNP카드 ( 주 )	일반	1,451,596
인별힙	· ·계금액			1,451,596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91219-0118148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8-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800,000	41,873,170	0	0	42,673,170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	(주)제로페이	일반	800,000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	(주)제로페이	전통시장	41,873,170
인별합계금액				42,673,17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0	0	0	4,000,000	4,000,000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	(주)제로페이	도서공연등	4,000,000
인별합계금액				4,000,000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91219-0118148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0-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장인	60010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600,000	0	0	0	600,000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	(주)제로페이	일반	600,000
인별합계금액				600,000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0	1,500,000	0	0	1,500,000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	(주)제로페이	전통시장	1,500,000
인별합계금액				1,500,000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403,900	2,777,251	696,969	309,202	5,187,322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고ᅰ대사그애
<del>丁正</del>	<del>οπ</del>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67,600	57,200	26,400	124,000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24,000	40,000	65,680	40,000	1,403,900
		67,420	102,700	350,000	438,900	
		7,400	48,610	59,460	25,66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174,600	7,920	296,250	498,990	2,777,251
		491,000	18,990	1,101,610	46,761	
		1,893	0	4,60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24,900	24,900	344,750	0	696,969	
		130,640	90,700	69,140	5,446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고테디사그애
<del></del>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32,170	32,170	53,652	48,11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0	107,000	19,910	16,190	309,202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34-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60,460	448,832	265,350	143,530	1,018,172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	l대상금액		
구분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고ᅰ대사그애
<del>丁正</del>	<del>οπ</del>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7,310	16,000	11,600	21,160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24,490	17,840	17,840	17,840	160,460
		5,530	5,530	5,530	9,790	
		9,790	27,922	35,620	35,62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44,980	27,300	27,300	51,850	448,832
		51,850	24,330	39,830	72,440	
		39,830	5,000	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39,320	111,530	0	0	265,350	
		10,610	0	29,530	29,53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20191219-0118148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5-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 공제대상금액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29,530	0	0	0	-
		21,080	12,120	3,800	38,500	
		0	38,50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3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41,240	1,513,296	87,600	96,380	1,838,516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	대상금액		
78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45,540	580	580	58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8,540	8,660	3,420	4,900	141,240
		5,500	20,980	20,980	20,980	
		25,620	30,020	25,620	27,93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41,710	95,880	38,429	1,061,397	1,513,296
		61,390	61,450	0	43,850	
		0	18,480	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0	0	8,500	8,500	87,600
		0	26,060	26,06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	l대상금액		
78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4,400	5,500	8,800	6,40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5,100	8,110	0	0	96,380
		3,800	0	54,27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38-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부친	420101-*****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381,580	1,428,381	221,134	145,930	2,177,025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	l대상금액		
7 1	01월	02월	03월	04월	고ᅰ대사그애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32,330	32,330	30,090	57,82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57,820	23,600	23,600	23,600	381,580
		22,130	22,230	39,390	16,640	
		39,420	38,500	92,760	54,65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5,500	32,930	28,530	45,870	1,428,381
		27,570	21,740	5,830	1,035,081	
		27,770	27,770	22,420	22,420	
현금영수증	영수증 대중교통거래	22,420	17,470	28,860	28,860	221,134
		0	0	9,690	13,454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부친	42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	대상금액		
78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0	29,070	0	30,40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30,400	30,400	0	0	145,930
		1,370	24,29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4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펀드명	가입일자	연납입액	소득공제 대상금액
FGF 은행 (201-81-68***)	85475501122320	한국밸류 10년투자 소득공제	2014-04-08	2,200,000	880,000
YES은행 (202-81-00***)	250084183497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 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종류C	2014-04-30	6,000,000	2,400,000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2. 가입요건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소득공제 배제 : ①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② 가입일 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공제하지 아니함

-4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투자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투자금액 명세 (단위:원)

납입연도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투자신탁명	투자금액 계
2019	JM 은행(주) (104-86-39***)	54655500058433	A투자증권	3,000,000
2019	(주) NN은행 (202-81-14***)	21489006443313	B투자증권	9,000,000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종합소득 금액의 50%한도)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투자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투자금액 명세 (단위:원)

납입연도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투자신탁명	투자금액 계
2018	JM 은행(주) (104-86-39***)	54655500058433	A투자증권	2,000,000
2018	(주) NN은행 (202-81-14***)	21489006443313	B투자증권	9,000,000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종합소득 금액의 50%한도)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 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자립자단호)	(888)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내경픽
LI 새마을금고 (209-06-29***)	해당없음 (주택자금대출(주	2019-08-31 2039-08-31	20년	2019-08-30	2019-08-31	442,628	442,628
(209-06-29****)	(주택자금대출(주 택구입자금대출))	25,000,000	0	25,000,000	0	ŕ	,

- 1. 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 2014.1.1.~2018.12.31.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
-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FI새마을금고	617-19-58***	9301209187315	2017-12-08	37,646,410
HI은행	109-99-58***	36102147207900000000	2013-07-04	1,092,011
GI은행	109-99-61***	1320700705254	2009-11-24	7,967,950
KI 은행	222-05-33***	0786300286121	2019-07-16	419,570
합 계				47,125,941

- 1.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여야 함
- 2. 공제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45-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QQ 은행 (617-19-68***)	43180795102145	청약저축	청약저축	1981-05-28	1,200,000
TT은행 (209-06-32***)	527107974857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06-16	600,000
MM은행 (310-06-89***)	36591006511925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05-12	1,200,000
합 계					3,000,000

- 1.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의 40%(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
- ※ 2014.12.31.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8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 아님
- ※ '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 ※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

-46-

2.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개인연금저축]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개인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계좌/증권번호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납입금액 계
A협동조합중앙회	219-82-01***	04411218821005	1996-07-23	2020-07-23	2,760,000
C금융투자	116-81-36***	03001107662005	1994-08-25	2020-08-25	3,300,000
합 계					6,060,000

※ 개인연금저축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47-

- 1.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2. 개인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연금저축]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연도 납입금액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순납입금액
계좌	계좌번호 납입금액		인출금액	
A협동조합중앙회	219-82-01***	4,000,000	0	4,000,000
983102	135692	4,000,000	0	4,000,000
B증권주식회사	202-81-48***	1 100 000	0	1 100 000
983102	366790	1,100,000	0	1,100,000
순납입금	· 악 합계			5,100,000

-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1.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
-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48-

4.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퇴직연금]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퇴직연금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연도 납입금액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순납입금액
계좌번호	연금구분	납입금액	인출금액	<del></del>
B증권주식회사	202-81-48***	2 800 000	1 800 000	2,000,000
7072155088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800,000	1,800,000	2,000,000
C금융투자	116-81-36***	1 000 000	1 000 000	0
7072220919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00,000	1,000,000	O
순납입금	}액 합계			2,000,000

-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1.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부담금 공제 (회사 부담금 제외)
- 2. 공제 대상: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49-

4.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공제부금 납입현황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가입일자 / 개정규칙 적용 여부	납입방법
201609220***	2016-09-22	월납(Month)
201009220	Υ	월립(MOHUI)

(단위:원)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01 월	2019-01-25	750,000	07 월	2019-07-25	750,000
02 월	2019-02-27	750,000	08 월	2019-08-25	750,000
03 월	2019-03-27	750,000	09 월	2019-09-03	750,000
04 월	2019-04-25	750,000	10 월	2019-10-25	250,000
05 월	2019-05-25	750,000	11 월	2019-11-27	250,000
06 월	2019-06-26	750,000	12 월	2019-12-26	250,000
소득공	<b>공제대상액</b>	7,500,000	납입	김금액 계	7,500,000

1.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과세

(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 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일련번호: 20191219-0118148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0-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126-82-13220	나눔의집(사회보장 정보원)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100,000	100,000	0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법정기부금	60,000	60,000	0
인별합계금액					16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112-82-00240	Z대학교발전기금	법정기부금	5,000,000	5,000,000	0
인별합계금액					5,00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2-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철수	05010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214-82-08005	CC인재재단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20,000	20,000	0
인별합계금액					2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부친	42010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214-82-08005	CC인재재단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120,000	120,000	0
112-82-05245	VV연구센터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50,000	50,000	0
인별합계금액					17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4-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